

복무규정개정안 수정가결 건 후속조치

현 행	상 정 안	수정개정안
<p>제28조(모성보호) ①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<u>육아휴직 대신</u>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2항 단서에 따라 <u>대표이사</u>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<u>그 밖</u>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</p>	<p>제28조(모성보호) ① ----- ----- <u>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제2항 단서에 따라 <u>사업주가</u> ----- ----- ----- <u>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</p>	

현 행	상 정 안	수정개정안
<p>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<u>30시간</u>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----- ----- <u>35시간</u> ----- -----</p>	
<p>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</p>	<p>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<u>다만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. <신 설></u></p>	
<p>⑥~⑦ (생 략)</p>	<p>⑥~⑦ (현행과 동일)</p>	<p>⑥~⑦ (현행과 동일)</p>
<p>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<u>다</u></p>	<p>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</u></p>	<p>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</u></p>

현 행	상 정 안	수정개정안
<p><u>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</u></p> <p><u>1. 육아휴직의 1회 사용</u></p> <p><u>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</u></p> <p><u>3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</u></p> <p><u>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</u></p> <p><신 설></p>	<p><u>28조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그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.</u></p> <p>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하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.</p>	<p><u>28조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그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사용기간은 1회에 3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으</p>

현 행	상 정 안	수정개정안
		<u>로 한다.</u>